

##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 신고 관련 추가안내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

1.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4.3) 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총량관리사업장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에 One Stop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①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별지 제4호서식)
- ②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 (대기관리권역법 별지 제4호서식)
- ③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대기관리권역법 별지 제3호서식)

2.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대상 시설 중 부착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3의 제3호 나목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는 **자체 TMS 설치계획서를 총량관리사업장 신고 시에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사업장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로 제출**하여 허가증 발급 시 또는 지자체 배출허용총량 협의시 TMS부착 유예여부 및 유예기간을 **환경부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3. 플레어스택, 폐가스소각시설의 총량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사항(배출 시설, 발생량, 배출계수 등)을**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하여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화염이나 고온 연소가스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에 직접 접촉하는 플레어스택, 고온소각시설 등에 대해 TMS부착 제외가 가능한가요?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제5항 및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는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든 배출구에는 TMS를 부착하여야 하나, **화염이나 고온 연소가스가 TMS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 등 시행령 별표 3의 제3호 나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2번과 동일한 절차로 자체 TMS설치계획서를 총량관리사업장 지원 센터(044-410-0691~3)로 제출**하여 환경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배출허용총량에 의해 할당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시 주요 보완사례

구분	보완사례	보완내용
제출서류	관련 허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허가대상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허가 검토결과서(통합환경관리계획서 포함) 및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첨부</li> </ul> </li> <li>▪ 지자체 허가대상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최신본 첨부</li> </ul> </li> </ul>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시설 설치연월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li> <li>▪ 배출량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MS 경우)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자료</li> <li>- (배출계수 경우) 배출계수 증빙 자료</li> <li>- (자가측정 경우) SEMS 자료 및 자가측정기록부</li> </ul> </li> <li>▪ 연평균 배출농도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MS 경우)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자료</li> <li>- (자가측정 경우) 자가측정기록부 증빙자료</li> </ul> </li> <li>▪ 활동도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도 증빙자료 첨부</li> </ul> </li> <li>▪ 방지시설 효율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효율 증빙자료 또는 사업장 입증자료 등</li> </ul> </li> </ul>
첨부서류	방지시설 면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시설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NOx, SOx, 먼지(TSP)]이 배출될 경우 해당 배출량 제출</li> </ul>
	예비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용 시설의 경우 주 시설에 연료사용량, 배출량 등을 포함하여 제출</li> </ul>
	발생량-배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구별 발생량은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기준으로 작성</li> <li>- 배출량은 발생량에 방지시설 효율 적용하여 작성</li> </ul> </li> </ul>
	배출구 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배출구의 번호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지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번호와 구분하여 배출구의 번호를 알 수 있도록 표기</li> </ul> </li> </ul>
기타	저녹스버너 효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효율(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설계도서) 자료 제시</li> <li>▪ 저녹스버너 인정검사서 제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검사서의 설계효율 적용(배출가스 측정결과는 사용불가)</li> <li>- 설계효율 미기재시 인정검사서의 인정기준을 활용하여 효율 산정적용(산정 방법은 사업장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의 자료실 참조)</li> </ul> </li> </ul>
	자릿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업무편람에 따른 자릿수 준수 필요</li> </ul>